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837
------	------

2025.06.18.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5.6.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25.6.18.) 상정, 의결(원안의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실장 주용태)

####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서울의 신성장 동력이 될 미래 산업(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등)을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조성·운영 중임.
- '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투자계정 전출금이 편성되어 '25년 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자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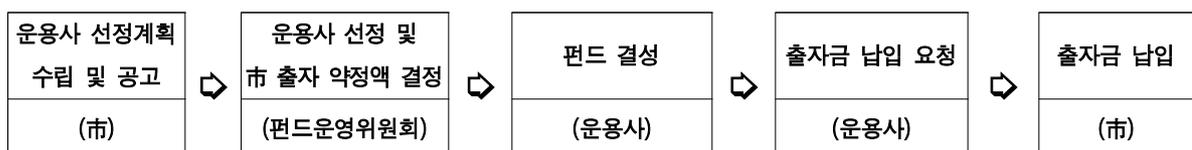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 나. 출자 개요

#### ○ 출자사업

펀드명	市 출자약정액	조성액	조성기간
미래혁신성장펀드	1,751억원	3조 6,857억원	'19년~'22년
서울 Vision 2030 펀드	3,500억원	5조원(목표)	'23년~'26년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20억원	200억원	'23년

### < 서울시 벤처펀드 출자 방식 >



- \*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 펀드 결성
- \* 투자기간(4년) 동안 출자금 분할 납입 → 회수기간(4년) 동안 출자금 회수  
(출자금 납입 후 출자증권 취득)

- 출자 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 ' 25년 출자계획 변경(안) : 829억원
  - 서울 Vision 2030 펀드 : 697억원(추경 100억원)
  - 미래혁신성장펀드 : 116억원
  -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5호 : 9억원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 7억원(추경, 민생노동국 신규 출자)

#### 다. 출자 필요성

- 총 3.7조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 펀드는 ' 19년부터 조성되어 차세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 피투자기업 1,549개사, 매출증대 4조 4,387억원, 고용창출 22,415명(' 24년말 기준)
- 총 5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 24년까지 2.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인공지능 펀드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 ' 23년 700억원, ' 24년 810억원 市 출자약정하여 벤처기업에 투자 중

(피투자기업 357개사, 매출증대 7,229억원, 고용창출 1,314명(' 24년말 기준))

- ' 23년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는 서울 소재 녹색기업에 투자하여 녹색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23년 조성 후 4개사 27억원 투자(' 24년말 기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5조(기금의 용도)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계획(안)

분 야	주 요 내 용	출 자 액	
		당초 계획	'25년 변경
<b>계</b>		<b>602억원</b>	<b>829억원</b>
<b>미래혁신성장 펀드</b>		<b>116억원</b>	<b>116억원</b>
① 4차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지원	11억원	11억원
② 스마트 시티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솔루션 분야 지원	38억원	38억원
③ 창업 지원	원천기술, 지식 기반 창업기업 지원	18억원	18억원
④ 재도전 지원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재도전 창업기업 지원	8억원	8억원
⑤ 서울바이오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36억원	36억원
⑥ 문화 콘텐츠	고부가가치의 콘텐츠 산업 지원	5억원	5억원
<b>서울 Vision 2030 펀드</b>		<b>477억원</b>	<b>697억원</b>
① 디지털대전환	디지털 전환 시대 선도기술 지원	71억원	89억원
② 인공지능대전환	인공지능(AI) 기반 및 인공지능 기술 적용 기업 지원	-	50억원
③ 서울바이오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유망기업 지원	60억원	110억원
④ 첨단제조	첨단기술을 통한 제조공정 혁신 및 신제품 생산기업 지원	58억원	73억원
⑤ 창조산업	지식재산권 기반 생산, 유통, 마케팅 등 종합 지원	75억원	94억원
⑥ 첫걸음 동행	창업 초기기업, 경영위기·재창업 기업, 대학창업기업 지원	49억원	76억원
⑦ 스케일업	스케일업 및 해외 진출 지원	144억원	180억원
⑧ 창업 지원	초기창업 투자 강화 및 상생협력	20억원	25억원
<b>녹색기업창업 펀드 제5호</b>		<b>9억원</b>	<b>9억원</b>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기후위기 대응 기술개발 산업 지원	9억원	9억원
<b>소상공인 더성장 펀드</b>		<b>-</b>	<b>7억원</b>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혁신·성장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	7억원

※ '25년도 시장상황 및 운용사 출자금 납입 요청에 따라 금액 변동될 수 있음

### I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서울의 신성장 동력이 될 미래 산업(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등)을 육성하기 위해 2025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투자계정 전출금에 대해 출자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조성 및 운용 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음.
- 그리고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조 2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수행하는 미래혁신성장펀드의 효율적인 조성·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sup>1)</sup>으로 분리·운용하고 있음<sup>2)</sup>.
- 미래혁신성장펀드는 2019년 최초 조성을 시작하여 2022년 조성이 종료되었으며, 2024년 현재까지 서울 소재 주목적 투자 대상 기업 600개사에 9,66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투자시점 대비 2조 3,873억원의 매출액 성장과 6,993명의 고용증가 성과가 보고되었음.

---

1) 2018년 10월에 신설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융자계정과의 기능 분리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융자계정으로부터 기금관리비(4억 7천 2백만원)와 펀드운용수입(24억 9백만원)을 이체 받았고, 향후 발생하는 펀드의 회수액은 투자계정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하였음.

2) 융자계정은 민생노동국 소관이며, 투자계정은 경제실 소관임.

### < 혁신성장펀드 주목적3) 투자실적 >

(단위 : 억원, '24.12.31.)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합계	11,528 (679)	1,756 (135)	3,703 (193)	3,076 (189)	2,993 (162)
4차산업혁명	2,479 (155)	582 (38)	1,036 (50)	452 (39)	409 (28)
스마트시티	1,127 (71)	81 (6)	470 (28)	446 (21)	130 (16)
문화콘텐츠	1,713 (134)	485 (42)	232 (17)	245 (31)	751 (44)
창업지원	3,633 (196)	283 (28)	1,076 (56)	1,203 (67)	1,071 (45)
재도전지원	318 (26)	45 (6)	97 (9)	120 (6)	56 (5)
바이오	2,258 (97)	280 (15)	792 (33)	610 (25)	576 (24)

\* ( )는 투자 받은 기업 수, 중복 포함

- 펀드는 4년 투자 후 4년간 수익을 회수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미래혁신성장펀드는 2023년부터 단계별 회수 기한이 도래하고 있으며, 2024년에 회수한 투자금은 총 55억 9천 6백만원임.

### < 2024년 투자계정 투자금회수 사업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펀드명	회수액
창업지원 펀드	2,145
스마트시티 펀드	536
디지털대전환 펀드	2
창조산업 펀드	454
재도전지원 펀드	669
지밸리 펀드	70
바이오 펀드	643
4차산업혁명	823
스케일업 펀드	2
녹색기업 창업펀드 3호	252
계	5,596

3) 주목적 투자 : 미래혁신성장펀드 6개 주요 분야별 서울시 주목적분야 투자실적

- 한편 서울시는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이 종료된 2022년부터 미래 기술 유망 산업군(바이오, AI, 콘텐츠 등)에 대한 펀드 투자로 ‘서울비전2030 펀드’ 를 신규 조성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음.<sup>4)</sup>
- 서울비전2030펀드는 2026년까지 총 5조원(서울시 3,500억원 출자) 규모로 조성할 계획<sup>5)</sup>이며, 2025년도 5월말까지 총 54개 펀드에 출자약정액 1,510억원 중 671억 8천 5백만원이 납입된 상태임(출자진행률 44.5%).

### < 서울비전2030펀드 서울시 출자 현황 >

(단위 : 백만원, '25. 5. 31. 기준)

구 분	선정 연도	펀드 수	市출자 약정액 (A)	누적 납입액 (B)			잔여출자금 (C = A - B)	출자진행률 (D = B / A)	
				합계	'23년	'24년			'25년 (*25. 5. 31. 기준)
Vision 2030 펀드	합계	54	151,000	67,185	8,975	41,496	16,714	83,815	44.5%
	2024	29	81,000	28,855	-	19,685	9,170	52,145	35.6%
	2023	25	70,000	38,330	8,975	21,811	7,544	31,670	54.8%

- 이러한 기금운용을 통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2025년 현재 사업 수입은 40억원, 예치금 회수 126억 6천 2백만원과 일반 전입금 107억원 등 수입계획에서 총 269억 4천 7백만원(31.6%)이 증가함.
- 그리고 이에 따라 지출계획도 수입 증액분을 반영하여 서울비전2030펀드 조성에 220억원, 신설되는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에 7억원, 보전지출(예치금)에 42억 4천 7백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투자계정의 운용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추가 출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필요함.

4) 2023년도 출자에는 기초성된 혁신성장펀드 중 서울비전2030펀드로 이어지지 않는 4차산업혁명펀드, 스마트시티펀드, 재도전지원펀드 잔여금 125억원에 대한 출자금이 포함됨.

5) 출자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과 기존 펀드 투자 회수금 등을 활용하며, 서울시(경제실)는 기금 및 펀드의 총괄관리·운영, 서울경제진흥원은 대행업무협약에 따른 시 업무 보조,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벤처캐피탈은 결성된 펀드의 운용을 담당함.

### <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

(단위 : 백만원)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85,192	112,139	26,947	계	85,192	112,139	26,947
사 업 수 입	5,000	9,000	4,000	출 자 금	60,674	83,374	22,700
위탁비반환수입	21	2	-19	예수원리금상환	15,543	15,543	0
이 자 수 입	1,902	1,505	-396	예 치 금	8,955	13,202	4,247
예 치 금 회 수	44,859	57,521	12,662	기 본 경 비	20	20	0
전 입 금	33,410	44,110	10,700				

### 다. 출자의 타당성

- 동 출자 동의안은 2024회계연도 투자계정 운용 결과에 따라 2025년 추가 경정예산으로 투자계정 전출금이 편성되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하기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출자는 전년도 펀드 회수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변경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서울비전2030펀드에 220억원,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에 7억원을 추가 출자하려는 것임.

###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계획(안)

분 야	주 요 내 용	출 자 액	
		당초 계획	'25년 변경
서울 Vision 2030 펀드		477억원	697억원
① 디지털대전환	디지털 전환 시대 선도기술 지원	71억원	89억원
② 인공지능대전환	인공지능(AI) 기반 및 인공지능 기술 적용 기업 지원	-	50억원
③ 서울 바이오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유망기업 지원	60억원	110억원
④ 첨단 제조	첨단기술을 통한 제조공정 혁신 및 신제품 생산기업 지원	58억원	73억원
⑤ 창조 산업	지식재산권 기반 생산, 유통, 마케팅 등 종합 지원	75억원	94억원
⑥ 첫걸음 동행	창업 초기기업, 경영위기·재창업 기업, 대학창업기업 지원	49억원	76억원

⑦ 스 케 일 업	스케일업 및 해외 진출 지원	144억원	180억원
⑧ 창 업 지 원	초기창업 투자 강화 및 상생협력	20억원	25억원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	7억원
소상공인대성장펀드	혁신성장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	7억원

- 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sup>6)</sup>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sup>7)</sup>에 따른 것으로, 기금의 용도와 투자계정에서 조성 중인 각 펀드 출자액을 고려할 때 출자의 타당성은 충족함.
- 특히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정책과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여파 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제 여건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대규모 공적 자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 다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의 결성 규모는 50억원에 불과한바, 통상적으로 100억원 이상으로 조성되는 다른 펀드들과 비교할 때 관리비용의 효율성이나 비용 대비 성과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음.

---

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7)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따라서 이러한 수익의 비효율은 운용사 참여 저조로 이어져 공적 자금 투자가 민간투자로 이어지는 마중물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면밀한 추진 계획의 수립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2837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서울의 신성장 동력이 될 미래 산업(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등)을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조성·운영 중임
- 나. '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투자계정 전출금이 편성되어 '25년 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자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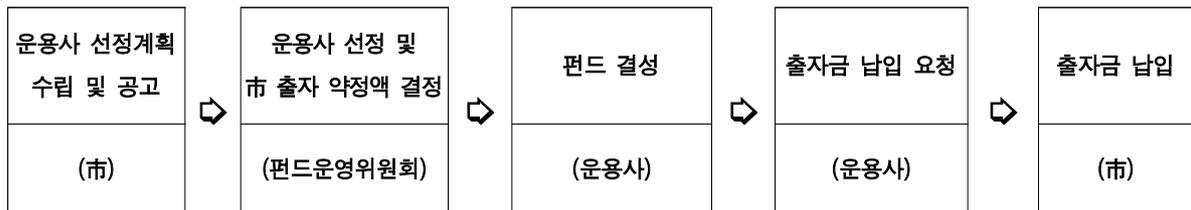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 나. 출자 개요

### ○ 출자사업

펀드명	市 출자약정액	조성액	조성기간
미래혁신성장펀드	1,751억원	3조 6,857억원	'19년~'22년
서울 Vision 2030 펀드	3,500억원	5조원(목표)	'23년~'26년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20억원	200억원	'23년

### 〈 서울시 벤처펀드 출자 방식 〉



\*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 펀드 결성

\* 투자기간(4년) 동안 출자금 분할 납입 → 회수기간(4년) 동안 출자금 회수  
(출자금 납입 후 출자증권 취득)

○ 출자 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 '25년 출자계획 변경(안) : 829억원

- 서울 Vision 2030 펀드 : 697억원(추경 100억원)

- 미래혁신성장펀드 : 116억원

-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5호 : 9억원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 7억원(추경, 민생노동국 신규 출자)

## 다. 출자 필요성

- 총 3.7조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 펀드는 '19년부터 조성되어 차세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피투자기업 1,549개사, 매출증대 4조 4,387억원, 고용창출 22,415명('24년말 기준)

- 총 5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24년까지 2.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인공지능 펀드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23년 700억원, '24년 810억원 市 출자약정하여 벤처기업에 투자 중

(피투자기업 357개사, 매출증대 7,229억원, 고용창출 1,314명('24년말 기준))

- '23년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는 서울 소재 녹색기업에 투자하여 녹색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3년 조성 후 4개사 27억원 투자('24년말 기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5조(기금의 용도)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 성 자 : 경제실 창업정책과 송정민 (☎ 2133-4757)

[붙임]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계획(안)

분 야	주 요 내 용	출 자 액	
		당초 계획	'25년 변경
<b>계</b>		<b>602억원</b>	<b>829억원</b>
<b>미래혁신성장 펀드</b>		<b>116억원</b>	<b>116억원</b>
① 4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지원	11억원	11억원
②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솔루션 분야 지원	38억원	38억원
③ 창업지원	원천기술, 지식 기반 창업기업 지원	18억원	18억원
④ 재도전지원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재도전 창업기업 지원	8억원	8억원
⑤ 서울바이오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36억원	36억원
⑥ 문화콘텐츠	고부가가치의 콘텐츠 산업 지원	5억원	5억원
<b>서울 Vision 2030 펀드</b>		<b>477억원</b>	<b>697억원</b>
① 디지털대전환	디지털 전환 시대 선도기술 지원	71억원	89억원
② 인공지능대전환	인공지능(AI) 기반 및 인공지능 기술 적용 기업 지원	-	50억원
③ 서울바이오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유망기업 지원	60억원	110억원
④ 첨단제조	첨단기술을 통한 제조공정 혁신 및 신제품 생산기업 지원	58억원	73억원
⑤ 창조산업	지식재산권 기반 생산, 유통, 마케팅 등 종합 지원	75억원	94억원
⑥ 첫걸음동행	창업 초기기업, 경영위기·재창업 기업, 대학창업기업 지원	49억원	76억원
⑦ 스케일업	스케일업 및 해외 진출 지원	144억원	180억원
⑧ 창업지원	초기창업 투자 강화 및 상생협력	20억원	25억원
<b>녹색기업창업 펀드 제5호</b>		<b>9억원</b>	<b>9억원</b>
녹색기업창업 펀드 제5호	기후위기 대응 기술개발 산업 지원	9억원	9억원
<b>소상공인 더성장 펀드</b>		<b>-</b>	<b>7억원</b>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혁신·성장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	7억원

※ '25년도 시장상황 및 운용사 출자금 납입 요청에 따라 금액 변동될 수 있음